

수원지방법원 2017. 6. 16 선고 2016나7322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, 피항소인

A

피고, 항소인 대한민국

변론 종결 2017. 5. 19.

판결 선고 2017. 6. 16.

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. 10. 12. 선고 2015가단19892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가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 B, C, D, E에게 '화성시 H 전 869㎡'의 별지 2 도면 표시 1, 2, 18, 19, 20, 21, 22, 5, 6, 7, 8, 9, 10, 11, 30, 29, 28, 27, 15, 16, 17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, 드 부분 735㎡ 중 별지 1 목록 기재각 지분에 관하여 2015. 1. 23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나.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2.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 총비용 중 1/10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 B, C, D, E에게 '화성시 H 전 869㎡' 중 별지 1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5. 1. 23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F이 1911. 8. 4. '경기 수원군 G 전 2,601평'을 사정받았는데, 위 토지에서 '수원군H 전 869㎡'가 분할되었으며, 그 후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'경기 화성군 H전 869㎡'로, 2001. 3. 21. '화성시 H 전 869㎡'(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, 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로 변경되었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. 5. 1.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I은 1949. 1. 14. 사망하였고, 당시 관습법에 따라 I의 제적등본상 호주를 상속한 장남 J이 I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.

J은 1995. 1. 24. 사망하였는데, J의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 선정자 B(상속지분3/11), 자녀 선정자 C(2/11), 선정자 D(2/11), 원고(선정당사자, 이하 '원고'라 한다, 상속지분 2/11), 선정자 E(상속지분 2/11)가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 내지 5호증, 을 제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1) 원고의 주장

[이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,400원에 매입하여 1947. 9.경 접수번호 12743호로 등기하였으나 6. 25. 사변으로 인하여 K면 사무소와 화성등기소가 불타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전부 소실되었다. J은 이 사건 토지에 I 과 모친인 L의 묘지를 조성하여 관리하였고, J이 1995. 1. 24. 사망한 후에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J의 분묘를 조성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등 J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(이하 '원고 등'이라 한다)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. 1. 23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설령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M이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 등이 점유해 왔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30, 29, 28, 27, 15, 16, 17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, ㄴ, ㄷ 부분 782㎡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의 주장

원고가 소지한 등기권리증(갑 제2호증)은 사본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, 그에 근거하여 I 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자주점유 주장은 이유 없다. 또한 피고가 2002년 M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한 후 2006년까지 대부료를 받았으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, 설령 원고 등이 별지 2 도면 표시 분묘 부분을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M이 점유한 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등의 점유가 인정될 수 없다.

나. 판단

1)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부분

갑 제6, 8호증의 각 기재, 1심 증인 N의 증언, 1심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, 1심법원의 측량감정결과, 1심 법원의 수원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9, 10, 11, 30, 29, 28, 27, 26, 25, 24, 23, 9의 각

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1㎡에 I, L, J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데, I은 1949. 1. 14., J은 1995. 1. 24. 각 사망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각 분묘가 이 사건 토지상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,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현존하는 항공사진상 적어도 2006년 이전부터 위 분묘들이 계속하여 존재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, ② 위 분묘 부분 외에 그 위의 밭 부분 별지 2도면 표시 1, 2, 18, 19, 20, 21, 22, 5, 6, 7, 8, 9, 23, 24, 25, 26, 27, 15, 16, 17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디 부분 424㎡도 원고 등이 팔 등을 심어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이 사건 토지는 분묘를 중심으로 윗부분의 도로, 윗부분 밭과 아랫부분의 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, 아랫부분 밭과 분묘의 높이는 2~3m 차이가 나고, 아랫부분 밭은 면적이 협소한데다 인접토지(R 전)와 연결되어 있어 이 사건 분묘 부분과는 구별되어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 등은 1995. 1. 24.과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, 2, 18, 19, 20, 21, 22, 5, 6, 7, 8, 9, 10, 11, 30, 29, 28, 27, 15, 16, 17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, 디 부분 735㎡(= ㄱ 부분 311㎡ + □ 부분 424㎡)를 별지 1 목록 기재 공유지분에 따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,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, 평온, 공연하게 계속하여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(민법 제197조 제1항, 제198조), 위 ㄱ, □ 부분 735㎡에 관하여 2015. 1. 23.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, 2, 18, 19, 20, 21, 22, 5, 6, 7, 8, 9, 10, 11, 30, 29, 28, 27, 15, 16, 17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기, 드 부분 735㎡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(피고는 분묘로 인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경우 소유권이 아닌 분묘기지권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원고 등이 그 주변의 밭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점유해 온 점에 비추어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,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).

2)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

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2, 3, 4, 5, 22, 21, 20, 19, 18, 2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7㎡과 같은 도면 표시 11, 12, 13, 14, 15, 27, 28, 29, 30,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7㎡ 역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원고가 제출한

증거들만으로는 그 배타적 점유 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. 5. 1.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, 2002. 8. 28.M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M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경작해 왔으므로, 10년이 경과한 2012. 1. 1.에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.

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2002.경 M과 사이에 대부기간 2002. 1. 1.부터 2006. 12. 31.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, M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, 2, 18, 19, 20, 21, 22, 5, 6, 7, 8, 9, 10, 11, 30, 29, 28, 27, 15, 16, 17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, 드 부분 735㎡를 실제로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, 더욱이 위 대부기간 종료일인 2006. 12. 31. 이후 M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라도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가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B, C, D,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래니, 판사 박성민, 판사 차주희

선 정 자 명 단

1. A
2. B
3. C
4. D
5. E. 끝.

(별지 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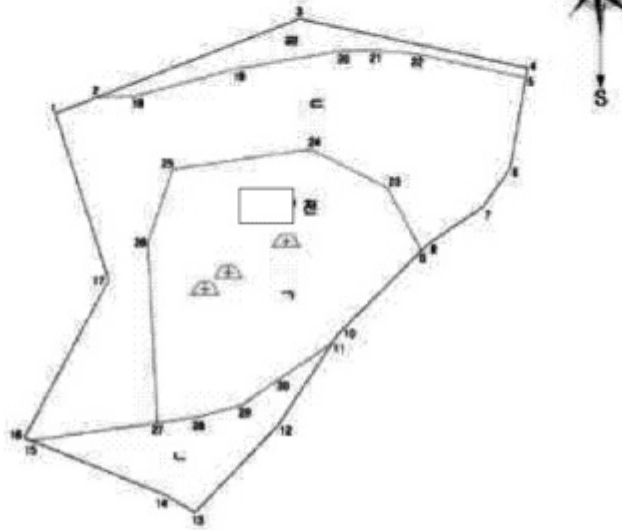
상속지분

1. A : 2/11 지분
2. B : 3/11 지분
3. C : 2/11 지분
4. D : 2/11 지분
5. E : 2/11 지분

(별지 2)

감 정 도

화성시



현 물 표 시

현 물	표 시
——	지하수
——	천수
△	묘지
○	경
□	전
□	도로
△	묘지

지 번	부 호	면적(㎡)
□	9,10,11,30,28,27,26,25,24,23,9	311
□	11,12,13,14,15,27,28,29,30,11	87
□	1,2,18,19,20,21,22,5,6,7,8,9,23,24,25,26,27,15,16,17,1	424
□	2,3,4,5,22,21,20,19,18,2	47
합 계		869